

자가진단 등록 ※ 자가진단 등록 완료시, 결과완료 Y 확인 및 최종점검 체크 후 저장 필수

자가진단 이력관리(펼치기)

자가진단이란?

기관기호	기관명	급여유형	차대 전달형	가산유형 인력 맞춤형 야간 간호사	자가진단 주기(월별 자동 FIX)	자가진단 결과점수 (가장 최근 자가진단 점수)	결과 완료	최종 점검	조회
31135000450	가족재가복지	방문요양			2025년 자가진단 월 03월 가산적용 월 01월	인력 맞춤형 적정	Y		

인력현황 인력운영 맞춤형 서비스 ※가산적용 월(전전월) 기준으로 자가진단 실시

번호	점검항목	관련 고시 등 참고사항	점검결과
1	신고된 직종별 종사자는 직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는가?	※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 고시 제50조(근무인원) ※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세부사항 제17조(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등) 등	Y
2	직종별 종사자의 전산에 등록된 근무인원과 실제 근무인원이 일치하는가?	※ 고시 제48조(인력배치기준)~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등 ※ 세부사항 제17조(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등)	Y
3	직종별 종사자의 전산에 등록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일치하는가?	※ 고시 제48조(인력배치기준)~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등 ※ 세부사항 제17조(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등)	Y
4	팀장급 요양보호사 가산을 받고 있는가?	※ 결과점수 산출 미포함 항목	N
5	4-Y,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자격기준(실무경력 5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을 충족하는가?	※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용)	
6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각 작성항목별(육구사정, 급여제 공계획, 상담 등) 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는가?	※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등 ※ [별지 제24호서식]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Y
7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가산받은 각 급여종류별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는가?	※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등 ※ [별지 제24호서식]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Y
8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 방문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가?	※ 급여관리업무 수행 인정 사유(고시 제57조 제3항) 1. 다음 각 목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 가.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 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 2. 급여제공이 18시 이후 06시 이전에만 이루어져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다만,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하여야 한다.	Y
9	사회복지사는 매월 방문상담에서 누락된 수급자 가정을 최소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방문하여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는가?	※ (8번-Y인 경우) 9번 점검결과 Y 선택 ※ (8번-N인 경우) 9번 점검결과 Y/N 중 선택	Y
10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실제 방문비용은 청구한 방문비용에 일치하는가?	※ 고시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세부사항 제17조(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등) 등	Y
11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20분 이상 방문상담(급여관리업무)을 수행하는가?		Y
12	기관은 모니터링 실시 월의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자가진단을 실시하는가? 단, 신규기관일 경우, 가산을 적용받은 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가?	※ 자가진단 중단기간(1~2월) 제외	Y

자가진단

인력운영

순번	지표	세부영역	점검결과	결과점수
1	신고된 직종별 종사자는 직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는가?	※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 고시 제50조(근무인원) ※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세부사항 제17조(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등) 등	Y	0
2	직종별 종사자의 전산에 등록된 근무인원과 실제 근무인원이 일치하는가?	※ 고시 제48조(인력배치기준)~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등 ※ 세부사항 제17조(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등)	Y	0
3	직종별 종사자의 전산에 등록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일치하는가?	※ 고시 제48조(인력배치기준)~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등 ※ 세부사항 제17조(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등)	Y	0
4	팀장급 요양보호사 가산을 받고 있는가?	※ 결과점수 산출 미포함 항목	N	0
5	4-Y,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자격기준(실무경력 5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을 충족하는가?	※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0
6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각 작성항목별(육구사정, 급여제공 계획, 상담 등)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는가?	※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등 ※ [별지 제24호서식]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Y	0
7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가산받은 각 급여종류별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는가?	※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등 ※ [별지 제24호서식]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Y	0
8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 방문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가?	※ 급여관리업무 수행 인정 사유(고시 제57조 제3항) 1. 다음 각 목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 가.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 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 2. 급여제공이 18시 이후 06시 이전에만 이루어져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다만,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하여야 한다.	Y	0
9	사회복지사는 매월 방문상담에서 누락된 수급자 가정을 최소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방문하여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는가?	※ (8번-Y인 경우) 9번 점검결과 Y 선택 ※ (8번-N인 경우) 9번 점검결과 Y/N 중 선택	Y	0
10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실제 방문비용은 청구한 방문비용에 일치하는가?	※ 고시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세부사항 제17조(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등) 등	Y	0
11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20분 이상 방문상담(급여관리업무)을 수행하는가?		Y	0
12	기관은 모니터링 실시 월의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자가진단을 실시하는가? 단, 신규기관일 경우, 가산을 적용받은 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가?	※ 자가진단 중단기간(1~2월) 제외	Y	0
최종결과				0

프로그램 운영

순번	지표	세부영역	점검결과	결과점수
0				
최종결과				0